* 치재 사회적협동조합 서식

위 임 장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위임한 사람 | 성명 | (서명 또는 인) | 생년월일 | |
| 주소 | | 연락처 | |
|  | 아래 위임 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함 | | □ |
| 위임받은 사람  (대리인) | 성명 | (서명 또는 인) | 생년월일 | |
| 주소 | | 연락처 | |
| 「치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」제37조(대리인이 될 자격)이 정한 자격을 갖췄음을 확인함 □ | | | |
| 위임 내용 | 2024년도 정기총회 안건 심의·의결·선거권 | | | |

「치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」제36조(의결권 및 선거권)에 따라 대리권을 신청합니다.

치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귀하

2025년 3일 일



유의 사항

1. 「치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」제36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제출방법: ① 우편: (06042)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40길 46 G&A학동파크 4층 │ 원본 발송

② 메일: [chijaesc@gmail.com](mailto:chijaesc@gmail.com) │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치재 사회적협동조합 메일로 발송(원본 현장제출)

③ 현장: 총회 시작 전 명부확인 절차에서 제출

1. 「치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」 제37조에 따라 조합원 본인이 지명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 협동조합의 주요한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위임 절차인 만큼 조합의 취지 및 조합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 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을 대리인으로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.
2. 「치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」 제37조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합니다.
3.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 청할 때에는 「형법」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
4. 위임하고자 하는 조합원과 위임 받는 대리인 모두‘서명 또는 인’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 니다.